

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8월 8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

● 법률 제19603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에 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피. 매독(梅毒)

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.

제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제4급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고, 매독을 제4급감염병에서 제3급감염병으로 조정함.

<법제처 제공>